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합521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추은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제1 내지 3, 5 내지 11항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323,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1,323,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 보험업법상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이며, 피고의 남편인 C은 2013. 6. 12.부터 2019. 4. 16.까지 D의 지배인으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E,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 4. 23.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73,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38,998,484원 및 그 중 35,801,705원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863)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원리금은 2020. 1. 6.을 기준으로 261,323,550원이다.

다. C의 무자력

C은 2015. 6. 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등 아무런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라. C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1) C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각 기재와 같이 2016. 2. 24. 1억 1,700만 원, 2016. 12. 21. 7,500만 원, 2016. 12. 29. 1억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C은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각 기재 일자에 각 기재 금액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문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서 양자간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소장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다가 2020. 9. 28.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면서 제1예비적 청구로 별지2 목록 기재를 포함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2021. 3. 5. 예비적 청구로 별지2 목록 기재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별지1 목록 증여계약의 취소와 별지2 목록 증여계약의 취소는 증여의 법률행위와 목적물이 상이한 점에서 동일한 소송물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어 신소를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별지1 목록 증여계약의 취소와 별지2 목록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양립가능하므로 본래적 의미의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각 청구를 심판의 순위에 붙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는 그 실질 귀속 주체가 C으로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인

261,323,550원에서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별지2 목록 기재는 D 계좌에서 대체출금한 주체가 C이라고 할 수 없고, C이라고 하여도 D의 자금을 빼돌려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인 261,323,550원에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61,323,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D를 운영하면서 C이 지배인으로서 D 회계기간 종기에 잔고를 맞추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하거나 수금한 돈을 심부름하여 피고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D으로부터 출금하는 돈 중 직접 피고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경우도 있으나, 주주차입금 장부상 잔액의 수준, 장차 연말 회계장부 작성 고려 등으로 C을 시켜 D으로부터 출금하여 피고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바로 타처에 사용하게 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는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C이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각 기재와 같이 2016. 2. 24. 1억 1,700만 원, 2016. 12. 21. 7,500만 원, 2016. 12. 29. 1억 2,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F가 2016. 2. 24. C에게 1억 1,70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1,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16. 2. 27. D에 자신의 자금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② C이 2016. 12. 21. 피고에게 현금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다음날인 2016. 12. 22. D에 7,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③ F가 2016. 12. 29. C에게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이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D에 자신의 자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같은 날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에 송금되었는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별지2 목록 제1 내지 3, 5 내지 11항 송금행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1. 4.부터 2018. 1. 11.까지 10차례에 걸쳐 C이 피고에게 1회당 1,000만 원 이상씩 송금하여 다액이고, C이 D에서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제외한 것인 점, ② 피고는, C이 D에서 출금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D에서 출금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경우에 해당하여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실제 피고와 D의 송금거래가 많음에도 위 항목만 C을 통하여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별지2 목록 제9항의 7,000만 원의 경우 2017. 12. 28. D의 회계를 위하여 G에게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후 피고의 G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송금행위는 C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2 목록 제4항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6. 12. 30. 피고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D에 자신의 자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별지2 목록 제1 내지 3, 5 내지 11항의 합계 250,323,550원[= 2,000만 원 + 1,5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1,5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 7,000만 원 + 4,000만 원 + 20,323,550원(4,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323,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정진우, 판사 박예지

[별지 1]

목록 (이 사건 각 증여의 표시)

1. 2016. 2. 24. 117,000,000원
 2. 2016. 12. 29. 125,000,000원
 3. 2016. 12. 21. 75,000,000원 중 19,323,550원
- 합계 261,323,550원

[별지 2]

목록 (이 사건 각 증여의 표시)

1. 2016. 1. 4. 20,000,000원
2. 2016. 1. 15. 15,000,000원
3. 2016. 7. 8. 10,000,000원
4. 2016. 12. 30. 11,000,000원
5. 2017. 1. 9. 20,000,000원
6. 2017. 4. 14. 15,000,000원
7. 2017. 7. 7. 30,000,000원
8. 2017. 9. 28. 10,000,000원
9. 2018. 1. 2. 70,000,000원
10. 2018. 1. 3. 40,000,000원
11. 2018. 1. 11. 40,000,000원 중 20,323,550원
- 합계 261,323,550원

